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아동가족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아동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아이빛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변경 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어린이집 설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아파트는 본리동 358-3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총 993세대로 2026. 3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2025. 9. 11. 제출함에 따라 해당 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사업 주체와 달서구청 간 상호 조정하여 2025. 10. 21.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아파트 단지 내 소재하며, 연면적 607.8655㎡, 정원 50명 정도의 관리동 시설입니다.
- 민간위탁 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 교직원 인사, 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입니다.

- 의회 동의 후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 준공 일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5월경 개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변경위탁 1개소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이빛어린이집은 조암남로 182(월배아이파크1차)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 지상1층 건물로 연면적 214m², 정원 43명, 현원 42명, 보육교직원 12명이며 2021. 4. 1.부터 2026. 3. 31.(5년)까지 원장 김정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 3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각 영역별로 우수한 결과를 받았으며, 2018. 11. 1.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현위탁체인 원장 김정자의 정년 도래로 재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향후 계획으로 의회 동의 후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선정된 위탁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125
----------	----------

제출일자: 2025. 11. 14.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아동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운영, 아이빛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변경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 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라. 위탁시설 현황

○ 신규설치

시설명	소재지	세대수	규모	정원(안)	운영 방식	위탁 기간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 (가칭)	본리동358-3번지 (본리동)	993	607.8655㎡ (지상2)	50명 (예정)	민간 위탁	5년

○ 변경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현원	운영(원장)	위탁기간
아이빛 어린이집	조암남로182(유천동, 월배아이파크차)	214㎡ (지상1)	43/42	現김정자	2021. 4. 1. ~ 2026. 3. 31.(5년)

마. 위탁기간: 5년

○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2026. 4. 1. ~ 2031. 3. 31.(5년)

※ 준공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아이빛어린이집: 2026. 4. 1. ~ 2031. 3. 31.(5년)

바. 위탁체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지역 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3. 참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2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평가인증): 붙임3

○ 관계법령: 붙임4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저장 : 손원영 / 아동가족과 (2025-11-05 17:21:55)

문서번호	아동가족과-33168
등록일자	2025. 11. 5.
결재일자	2025. 11. 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보육팀장	아동가족과장
손원일	박숙희	김해숙
협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대상시설: 2개소

구분	시설명	소재지	세대수	규모	위탁기간(5년)
신규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 (가칭)	본리동 358-3번지 (본리동)	993	607.8655㎡ (지상2)	'25.41 - '31.33
변경	아이빛어린이집	조양남로182(유천동, 윙베어파크1차)	1,296	214㎡ (지상1)	'25.41 - '31.33

□ 추진방법: 공개 경쟁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향후일정 * 신규 위탁의 경우 준공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 변경 가능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5. 12.
- 위탁제 모집 공고 : 2026. 1.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6. 2.
- 위·수탁계약 체결 : 2026.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아동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우수한 민간위탁체를 선정코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II 추진방향

-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위탁체와 계약 추진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III 시설현황

- 신규위탁

시설명	소재지	세대수	규모	정원(인)	위탁기간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 (가칭)	본리동 368-3번지 (본리동)	993	607.8655㎡ (지상2)	50명 (예정)	5년

- 변경위탁

시설명	소재지	현 위탁체	정원/현원	위탁기간	변경사유
아이넷 어린이집	조양남로182(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차관리동)	개인(김정자)	43/42	2021.4.1.~ 2026.3.31.(5년)	정년도래

IV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

대상시설

- 신 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 준공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 변경가능
- 변 정: 아이빛어린이집

위탁기간 : 5년(2026.4.1. ~ 2031.3.31.)

나. 위탁체 선정 방법: 공개경쟁을 통한 서류 심사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다. 위탁체 모집 공고: 의회 동의 후 2026. 1월(예정)

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심사개요

- 일 시: 2026. 2월(예정)
- 장 소: 4층 회의실
- 심사위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14명
 - ※ 위탁 기관 및 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 배제
 - ※ 사전 검토를 위해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안)을 심사일 3일 전 위원에게 송부
 - ※ 심사 자료 및 개인 정보 유출 금지 및 서약서 징구

심사안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체 선정 심의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심사기준표 【붙임1~2】

심사기준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산점
102점	40	35	10	10	5	2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으로 선정하되, **심사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운영체(자)**

- ※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재공고

○ 심사주체: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 발 표 자: 운영체의 원장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과 대표 동시 참석 원칙 대리장석시 위임장 제출

- 발표내용 ※ 발표순서(가나다순), 발표일시 추후 유선 안내
 - 운영계획 소견 등 발표(5분 이내)
 -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평가
- 최종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결정

마.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운영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후에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위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해야 함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바.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현재 시설물 상태(내부집기 포함)로 무상임대 하는 조건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노안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 심사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수탁 기간 중 보조금 지원 기준 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원 불가

V

향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2.
- 위탁체 모집 공고 : 2026. 1.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6. 2.
- 위·수탁계약 체결 : 2026. 3.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 시설명: _____ 어린이집 (원 장: _____)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목		배점
합 계	102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5 12 9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10 7 5 3 1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시설 운영 관리 *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어부, 업소우수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심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심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이 우수한 경우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이 보통인 경우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복지 및 보육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가산점	2	-달서구에 주소를 둔 경우(법인의 경우 사업장의 주소 기준) -달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1 1

* 비고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제위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동법 제 20조의 정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받은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신청한다. 이 경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 전문개정효진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민간위탁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어린이집 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 절감 ◦ 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의 유연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함이 적절함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도에 대한 비교 측정 용의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평가 실시 ◦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체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하며 확보 가능 ◦ 지역 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 전문가(김은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비용 고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유보통합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이에 따라 보육 공공성 제고 방안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탁월한 보육철학과 성실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보육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 관리의 연계

- 민간위탁 선정 어린이집은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보육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수혜받은 지원을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교육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 참여와 달서구청의 지도·점검을 결합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우수한 보육 환경,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피드백에 기초한 보육의 질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